Grant Thornton

신규 법규정 업데이트

2020年6月

Content

결의안 No. 954/2020/UBTVQH14 에 따른 개인소득세 기본공제금액 한도 상향

결의안 84/NQ-CP 에 따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기업들에 대한 베트남정부의 경영활동 보조정책

공문 No. 5977/BTC-TCT 에 따른 Decree No. 41/2020/ND-CP 실행안내지침

시행령 No. 57/2020/ND-CP 에 따른 수출입관세 우대항목 지정 (자동차 생산분야)

©2020 Grant Thornton (Vietnam) Limited. All rights reserved.

1. 결의안 No. 954/2020/UBTVQH14에 따른 개인소득세 기본공제 한도 상향

2020년 6월 2인, 국회 상임위원회는 개인소득세의 기본공제금액 한도 상향을No. 954/2020/UBTVQH14을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참고로, 해당 기본공제금액은No. 04/2007/QH12(개인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및Law No. 26/2012/QH13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요 결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수정 전	수정 후
본인공제	9,000,000 VND / 월	11,000,000 VND / 월
부양가족공제	3,600,000 VND / 월	4,400,000 VND / 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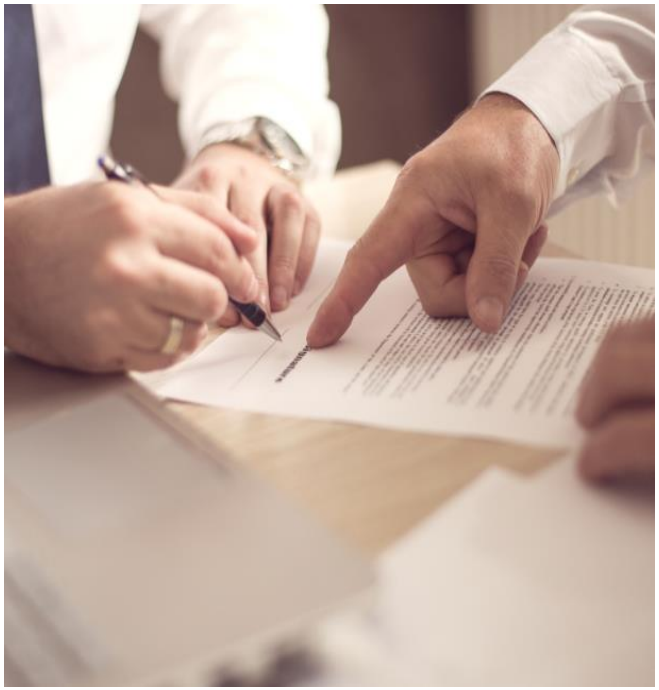

* 본 개정사항은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020 Grant Thornton (Vietnam) Limited. All rights reserved.

2. 결의안 84/NQ-CP 에 따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기업들에 대한 베트남정부의 경영활동 보조정책

2020년 5월 29일 정부는 Covid-19기간동안 경영활동 및 생산활동이 입은 피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결의안 84/NQ-CP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중 중요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Covid-19 기간 동안 경영 및 생산활동을 멈췄어야만 했던 기업, 조직, 가정 및 개인 (시행령 및 기타 유관기과의 계약서에 의해 토지를 임대한) 에게 2020년 토지임대료를 15% 감액합니다.

"SME 발전펀드"에서 직접대출 또는 간접대출한 SME(mall and medium enterprises)들의 이자율을 2%씩 낮춥니다.

2020년에 한하여 국내 제조업 혹은 차량 조립업의 등록세 50%를 낮춥니다.

2020 년 3 월부터 발생한 국내에서 제조 또는 조립 된 자동차에 대한 특별 소비세의 납부 기한을 연장합니다. 연장기한은 2020 년 12 월 31 일 까지입니다. 정부는 국내 생산 및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 소비세 납부 규정을 계속 연구하고 개정하고 있습니다.

©2020 Grant Thornton (Vietnam) Limited. All rights reserved.

2. 결의안 84/NQ-CP 에 따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기업들에 대한 베트남정부의 경영활동 보조정책

베트남 투자 및 비즈니스 프로젝트에 종사하는 외국전문가, 기업 관리자, 투자자, 고도로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가 베트남에 입국하여 경영 및 생산활동 시 베트남 정부의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규정을 준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에 거주하고 일하는 외국인을 차별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호치민 노동보훈사회부는 구체적인 지침과 호치민시에 들어오기 위한 신청양식을2020년 5월 29일 공문13413 / SLĐTBXH-VLATLĐ를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베트남 내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전문가, 기업 관리자, 고도로 숙련 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취업허가(워크퍼밋) 갱신에 대하여 베트남에 입국하거나 귀국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체하기 위해 외국인 전문가, 기업 관리자, 고도로 숙련 된 외국인 근로자에게 신규 취업 허가를 발급합니다.

법인세 계산 시 Covid-19의 전염병 방지 활동에 기여하고 지원한 비용은 공제 가능한 비용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정부는 Covid-19 전염병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SME의CIT 30% 감축하기 위해 해당 내용을 국회의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2020 Grant Thornton (Vietnam) Limited. All rights reserved.

3. 또한 정부는 Covid-19 전염병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SME의CIT 30% 감축하기 위해 해당 내용을 국회의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2020 년 5 월 20 일, 재무부는 시행령 41 / 2020 / ND-CP의 시행에 관한 공문 No. 5977 / BTC-TCT를 각 장관, 장관급 동일 권한 보유부처, 정부 및 지역인민위원회에 발행하였습니다. 본 공문에서 재무부는Decree No. 41/2020/ND-CP의 제 3 항. 법인세 납부연장 및 부가가치세 연장신청과 관련된 5 가지 내용을 언급하였습니다.

©2020 Grant Thornton (Vietnam) Limited. All rights reserved.

3. 또한 정부는 Covid-19 전염병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SME의CIT 30% 감축하기 위해 해당 내용을 국회의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1. 시행령 91/2014/ND-CP 제4조 제6항 및 시행규칙 151/2014/TT-BTC 제 17조에 따라 법인세 분기별 추정납부 중 마지막 분기의 납부액은 전체 납부할 법인세액의20%를 초과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납세기한연장에 따른 것으로도 보지 않는다.

2. 만일, 기업의 회계연도(Fiscal Year)와 역년(Calendar Year)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연장된 납세기한은 기업의 세금기간(Tax Period)에 따라 결정한다.

3. 만일, 기업이 2019년 법인세 확정신고에 대하여 서류를 보충 제출 하여야하고, 이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이 증가하는 경우, 이는 연장된 납세기한 전에 제출되어야 한다. 연장된 납부세액은 상기 (1)의 원칙에 따르며, 기업의 납부해야 할 해당 회계년도 총 법인세액은 보충신고 서류에 근거한다.

4. 만일, 2019년 확정신고에 대하여 세무감사, 세무조사 및 이에 대한 최종결정서 발행이 연장된 납세기한 전에 이루어졌을 경우 납부연장 될 세액은 상기 (1)의 원칙에 따르며, 해당 연도에 납부해야 할 세액은 세무감사 또는 세무조사 결과에 근거한다. 참고로 신청 가능한 연장기한은 2019 년CIT 확정신고 서류 제출 마감일로부터 5 개월이다.

5. 다른 도시에 건설프로젝트를 보유하고 있고 그 도시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기업이 납세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가 속한 도시의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또한 연장된다.

©2020 Grant Thornton (Vietnam) Limited. All rights reserved.

4. 시행령 No. 57/2020/ND-CP 에 따른 수출입관세 대상항목에 대한 수정

2020 년 5 월 25 일, 정부는 수출입 관세에 관한 시행령 57 / 2020 / ND-CP를 발행했습니다. 주목 할 만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대상 제품 및 상품 항목 중 우대 수출입관세 항목을 지정
- 2020-2024 년동안, 자동차 제조 및 조립분야의 발전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우선 순위로 지정된 제품을 생산, 가공, 조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원자재, 부품 및 기타 구성 요소에 대해서는 우대 수입관세율 0 %로 지정.
    - 자동차 제조업 혹은 부품/부속품 가공(조립)업에 종사하는 기업
    - 자동차 제조업 및 부품/부속품 가공(조립)업에 모두 종사하는 기업

세율 우대기간은 최장 6개월이며, 기간 내의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혹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니다. 또한 시행령 125 / 2017 / ND-CP 및 해당 시행령 첨부 된 부록의 "2019 년 1 월 1 일 이후부터 WTO 약정이 적용되는 다수의 상품에 대한 특혜 수입 세율규정"의 내용을 폐지합니다. 본 시행령 57 / 2020 / ND-CP는 2020 년 1 월 1 일부터 적용 가능한 자동차 부품의 우대수입관세율에 관한 제 2 조 제3 항을 제외하고는 2020 년 7 월 10 일부터 시행됩니다.

©2020 Grant Thornton (Vietnam) Limited. All rights reserved.

Contact

고객님께서 조세,회계, 가격이전,외국인의활동, 투자,세관및 로동자, 투자정책, 생산영업과정에 발생된 문제점들에 대한 자문을 더 필요하시면 우리Grant Thornton 의 전문가 들하고 연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객님은 상기 소식통을 DOWNLOAD 을 하고 싶면 우리의 다음 web에들어오셔서 검색해주시면 된다: **Tax Hub**

Head Office in Hanoi
18th Floor, Hoa Binh International Office Building
106 Hoang Quoc Viet Street, Cau Giay District, Hanoi, Vietnam
T + 84 24 3850 1686
F + 84 24 3850 1688

Hoang Khoi
National Head of Tax Services
D +84 24 3850 1618
E khoi.hoang@vn.gt.com

Nguyen Dinh Du
Tax Partner
D +84 24 3850 1620
E du.nguyen@vn.gt.com

권 혁 준 (Kwon Huyck Jun)
Director – Korean Desk
D +84 24 3850 1679
E hyuckjun.kwon@vn.gt.com

Vishwa Sharan
Director – Transfer Pricing
D +84 327 345 053
E Vishwa.Sharan@vn.gt.com

Bui Kim Ngan
Tax Director
D +84 24 3850 1716
E ngan.bui@vn.gt.com

김민제 (Kim Minje)
Manager – Korean Desk
D +84 379 591 011
E minje.kim@vn.gt.com

Ho Chi Minh City Office
14th Floor, Pearl Plaza, 561A Dien Bien Phu Street
Binh Thanh District, Ho Chi Minh City, Vietnam
T + 84 28 3910 9100
F + 84 28 3910 9101

Nguyen Hung Du
Tax Partner
D +84 28 3910 9231
E hungdu.nguyen@vn.gt.com

Valerie – Teo Liang Tuan
Tax Partner
D +84 28 3910 9235
E valerie.teo@vn.gt.com

Tran Nguyen Mong Van
Tax Director
D +84 28 3910 9233
E mongvan.tran@vn.gt.com

Nguyen Thu Phuong
Tax Director
D +84 28 3910 9237
E thuphuong.nguyen@vn.gt.com

Masato Karoji
Director –Japanese Desk
D +84 28 3910 9135
E masato.karoji@vn.gt.com

Lac Boi Tho
Tax Director
D +84 28 3910 9240
E tho.lac@vn.gt.com

Grant Thornton

grantthornton.com.vn

© 2020 Grant Thornton (Vietnam) Limited - All rights reserved.

'Grant Thornton' refers to the brand under which the Grant Thornton member firms provide assurance, tax and advisory services to their clients and/or refers to one or more member firms, as the context requires. Grant Thornton International Ltd (GTIL) and the member firms are not a worldwide partnership. GTIL and each member firm is a separate legal entity. Services are delivered by the member firms. GTI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GTIL and its member firms are not agents of, and do not obligate, one another and are not liable for one another's acts or omissions.